

차기회장 선거관련 규칙 및 규정

1. 차기회장 선거규칙

제 정 : 1982년 4월 22일
12차개정 : 2018년 6월 8일

제 1 조 (목적) 본 규칙은 정관 제11조, 제13조 및 제33조에 의거 차기회장의 선거 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선거관리위원회 설치) 차기회장의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위원장 1명, 위원 8명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.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
제 3 조 (임 무)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칙에 의하여 차기회장을 선출하는 사무를 관장하고 이사회에 선거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그 임무를 완료한다.

제 4 조 (재 정)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비용을 학회에 청구 영달하여 충당한다.

제 5 조 (차기회장 입후보자의 자격) 차기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.

① 차기회장 입후보자는 우리 학회 다음 각 항의 활동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자.

1. 부회장
2. 이사
3. 지부장
4. 소사이어티 회장
5. 연구회 운영위원장
6. 위원회 위원장

② 차기회장 입후보 등록일 현재 10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

③ 입후보 연도를 포함하여 차년도, 차차년도에 본 학회와 관련성이 많은 학회의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을 중 임하는 자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, 학회 관련성의 해석과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 6 조 (차기회장 선출 방법) 차기회장은 다음 순서와 방법으로 선출한다.

1. 차기회장 선거 공고는 투표시작일 기준으로, 前 30일~60일 사이에 하여야 한다.
2. 차기회장은 차기회장 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종신회원과 2년 이상의 자격을 유지한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.
3. 차기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투표권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자기 소개서 및 출마소견서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한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.
4.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차기회장 선거 운동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5. 선거시작일 익일부터 선거종료 후 익일까지 전일 기준의 총 투표율을 학회 홈페이지 및 선거시스템에 매일 공고한다.

6. 차기회장은 차기회장의 임기시작 20일 전까지 투표로 선출하며, 최다득표자로 한다. 단 최 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
7. 입후보자 수가 1인인 경우, 그 후보자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, 선거권자 총수의 7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총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일 경우에 당선인으로 확정한다.
8. 7호에 의거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. 단, 재선거에서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,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.

제 7 조 (입후보자 선거운동) 차기회장 선거의 입후보자 선거 운동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부칙.

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(2018. 6. 8.)부터 시행한다.

2. 차기회장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

제 정 : 2008년 6월 13일
1차개정 : 2018년 6월 8일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차기회장 선거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차기회장 선거 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준수 의무) 차기회장 선거의 입후보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, 입후보 등록 시 규정 준수 서약을 해야 한다.

제3조(선거운동 제한) 차기회장 선거의 입후보자는 개인적인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며,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입후보자 홍보)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선거 입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입후보자 홍보물을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이용하여 각각 2회 이내로 모든 유권자에게 발송한다.

제5조(후보자 홍보물 제작)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입후보자 홍보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는 입후보자가 직접 제작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6조(후보자 홍보물 제한) 차기회장 선거 입후보자의 홍보물은 이메일의 경우 A4 용지 기준 2매 이내, 휴대전화 문자는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크기 이내이어야 한다.

제7조(위반시 제재) 차기회장 선거입후보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거쳐 최초 1회는 주의 권고를 하고,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는 유권자에게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.

부칙.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(2018. 6. 8.)부터 시행한다.